

부속서 II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코스타리카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위하여 채택된 유보를 규정한다.
 - 가. 제9.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5조(현지주재)
 - 라. 제9.9조(이행요건)
 -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 바. 제10.4조(시장접근)
2. 이 유보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에 기재된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그리고
 -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3.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목록 내 유보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에 대하여, 코스타리카는 다음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p> <p>나.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 2) 수산, 또는 3)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2. 분야	문화 산업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p>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코스타리카는 시청각 협력 협정 등 문화 산업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향후 서명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화 활동 전통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제한 또는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p> <p>문화 산업은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을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인쇄된 신문이나 전자 신문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한다.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라. 인쇄된 약보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판독 가능한 약보의 제작, 배포, 또는 판매, 또는 마.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램서비스, 그리고 방송망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3.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코스타리카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보육, 공공 하수도 서비스 및 상수도 공급 서비스.</p>

4. 분야	공공서비스 ¹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p>코스타리카는 코스타리카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제 활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양허, 허가 및 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발생한 국가 독점에 대하여 법에 따라 또는 행정적으로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법적 의무로서 모든 유형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며 양허, 허가 또는 승인의 취득이 요구되지 않는 기관 및 공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p>

¹ 공공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발전, 송전, 배전 및 상업화를 포함한 전기 에너지 공급, 급수전서비스의 설치, 운영 및 유지뿐만 아니라 음용수, 하수의 수집, 처리 및 배출, 그리고 잔류수 및 빗물을 포함한 상하수도 공급서비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석유, 아스팔트, 가스 및 나프타 유도체뿐만 아니라 배급소의 국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석유, 아스팔트, 가스와 나프타를 포함한 탄화수소 유도체 연료의 공급, 판매 및 배수, 항공 운송을 제외한 승객의 유료 공공 수송, 국가 항구에서의 해상 및 항공 서비스, 철도화물 운송, 고체 및 산업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우편 통신의 사회서비스, 코스타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규제를 받는 그 밖의 모든 서비스.

5.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유아, 초등 및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 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교육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6.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코스타리카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7. 분야	소수민족 및 원주민 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취약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복권, 베팅 및 도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복권, 베팅 및 도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9. 분야	게임서비스 ²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게임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는 이 부속서의 유보항목 8번(복권, 베팅 및 도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복권, 베팅 및 도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분야	전기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발전, 송전, 변압, 배전 및 상업화를 포함한 전기 에너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1. 분야	철도, 항구 및 공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철도, 항구 및 공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2. 분야	천연 자원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보전, 관리, 보호, 탐사, 채취 및 이용을 포함하여, 천연 자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어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어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4. 분야	환경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환경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5. 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 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특급배달서비스³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우편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권리를 유보한다.</p>

³ 이 협정의 목적상,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거,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급배달서비스는 1) 항공운송서비스, 2) 정부 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급된 서비스 또는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그 기업에 유보된 서비스, 3) 우편 통신의 사회서비스 또는 4) 해상운송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방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코스타리카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방송)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7.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조사 및 경비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8. 분야	무기 및 폭발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무기 및 폭발물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및 소지를 포함하여, 무기 및 폭발물에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9.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p><u>투자</u></p> <p>코스타리카는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0.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